

보도 일시	2022. 12. 4.(일) 12:00 (월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12. 2.(금)
담당 부서	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	책임자	과 장 이형섭 (044-201-6831)
		담당자	사무관 임경희 (044-201-6832)

유해화학물질 매장 및 통신 판매자 집중 점검

- 판매사업장 점검 및 안내 통해 오남용 및 화학사고 사전 방지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유해화학물질*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.

* 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(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호)

- 이번 점검은 사고대비물질*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공약품상 100곳(통신 판매 30곳, 매장 판매 70곳)을 선정하여, 판매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.

* 염산, 과산화수소, 메탄올 등 급성독성·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

- 중점점검 사항은 △구매자의 신원 및 구매 용도 확인, △택배로 시약 판매 시 이중 포장, △안전교육 이수, △통신 판매자의 본인 인증 체계 구축, △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.

- 환경부는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사업장(4,320곳)을 대상으로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용도 등을 제대로 확인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하는 등 안내도 병행한다.

- 아울러 시약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지켜야 할 시약 판매업 신고, 취급기준 준수 고지 의무,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 등의 주요 의무사항도 환경부(me.go.kr)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.

- 한편, 환경부는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‘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’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다.
 - 올해, 온라인 감시단은 불법유해정보 1만 5,048건(10월 말 기준)을 확인하여 이중 시안화칼륨(일명 청산가리) 불법이용 게시물 등 4,147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.
 - 감시단원들이 서로 검색 방법을 공유하고 게시 사이트에도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신고(43%) 및 삭제(203%) 건수를 상당히 늘렸다.
-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“이번 기획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,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”라며,
 - “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화학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유해화학물질 판매자 점검 개요.
 2. 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 운영 개요
 3. 질의응답.
 4. 홍보자료. 끝.

☐ 추진 배경

- 유해화학물질의 오·남용사고를 방지하고자 온·오프라인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판매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
☐ 점검 기간 및 대상

- (점검 기간) '22. 12. 5. ~ 12. 23(3주간)
- (점검 대상)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업체, 시약 판매자 등 100개소
 - * 유해화학물질 개인 판매량이 많거나 다품종 취급업체 중 온라인 판매업소 30개소, 오프라인 판매업소 70개소 선정

☐ 중점 점검사항

- 영업허가 또는 시약판매업 여부
- 관리대장 내용 전부 작성여부(구매용도, 영업허가 확인 등)
- 본인인증체계 마련, 취급기준 등 고지 여부
- 운송 방식확인, 택배시 이중포장 여부
- 개인 판매시 안전관리 철저 확인 등

□ 목 적

- 인터넷상에 불법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사제 폭발물 제조방법 등을 감시·차단하기 위해 '11. 9월부터 온라인 감시단 발족·운영(50명)
- ※ (근거) 「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」(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94호)

□ 역 할

-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및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숙지
- 포털 사이트, 폭발물 사이트, 각종 SNS, 화학물질 불법 유통·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검색활동 전개
- 의심사례 발견 시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
- ※ 화학물질안전원 신고페이지(<http://icis.me.go.kr/ccst>)

□ 운 영

- (위 축) 임기 1년으로 활동실적과 기여도 평가로 우수자 재위축
- (신고) 사제 폭발물, 연막탄 제작·시연 영상 및 게시글,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불법유통 사이트 검색과 모니터링
- (평가) 감시단 신고실적 검토·분석
 - 신고사례를 유해정보, 일반 과학지식정보, 단순 호기심 유발 등 구분
 -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의심사례 게시물을 관련 사이트에 삭제 요청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삭제조치 요청
- (인센티브)
 - 활동 우수자는 환경부장관 및 화학물질안전원 상장·상금 수여
 -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명감 및 공감대 형성
 - 환경 우수시설 및 유관기관 전학 등으로 사기 진작 등

1. 개인이 구매하여 오·남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-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(1,093종), 제한물질(14종), 금지물질(60종), 사고대비물질(97종) 등 1,264종이 해당됩니다.

※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

2. 판매자를 점검하기 전에 개인이 유해화학물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면 오·남용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요?

- 흥분·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*을 환각 등의 목적으로 흡입, 소지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, 금지물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, 그 외 물질의 일반인 구매를 제한하기는 어려움

* 톨루엔,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, 시너, 접착제 등(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)

※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및 제22조

3. 오·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(판매) 유해화학물질 매장 및 통신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분과 구매 용도를 확인*한 후 판매하고, 또한 사용자에게 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,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**하여야 합니다.

*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, **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

- (사용) 유해화학물질 사용자는 유해성 정보를 인지하여 해당 취급 기준과 안전사용정보를 준수하고, 시약의 경우에는 시험·검사용·연구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
MINISTRY OF ENVIRONMENT
www.me.go.kr

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



환경부
Ministry of Environment

<안내 책자>



<카드뉴스>